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2조(청구서식)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시기) 청구인은 해당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 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액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건기록과 대조하여 청구서에 대한 흠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때
2. 비용부담에 대한 심결주문과 청구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3. 청구인 및 심판비용액을 부담할 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등에 흠이 있는 때
4.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최고서의 송달) ① 청구서에 흠이 없거나 보정에 의하여 흠이 치유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최고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의 각 부분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청구서 또는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④ 청구인의 비용항목이 제8조에 따른 비용항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청구금액이 제9조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하게 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지정등)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이거나 절차를 밟는데 특히 시일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항목의 범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
-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

제10조(비용계산)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심판비용액결정청구가 있는 해당 심판 또는 재심 사건기록과 청구인의 비용계산서 및 의견서, 피청구인의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 등을 참작하고 제8조의 비용항목 범위와 제9조의 비용계산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용청구금액이 비용 지출당시의 가액 여부
2.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심판 또는 재심의 기록과 부합 여부
3.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의 적정 여부

②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또는 그 금액 중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명하게 한 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을 위한 비용총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총계액은 청구인의 비용청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집행문등의 부여)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심판비용액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 절차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심판번호]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취지]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500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1. 비용계산서 1통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증빙서류 1통

[별지 제2호 서식] 비용계산서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비 용 항 목	금 액	내 역	비 고
총 계 금		원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8조(비용항목의 범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최고서<개정 2020. 1. 10.>

발 송 번 호

발 송 일 자

제 출 기 일

특 허 심 판 원
최 고 서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의 심결 확정에 따른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니 상기 제출기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비용계산서와 그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청구인/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심판비용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첨 부 :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부분 및 비용계산서 부분 1통. 끝.

20 . . .

특 허 심 판 원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문<개정 2020. 1. 10.>

특 허 심 판 원
심 판 비 용 액 결 정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20 . . . 자 심판청구된 0000 당(원) 000000 심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부담
하여야 할 심판비용액을 별지 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일금 원정으로
결정한다.

20 . . .

특 허 심 판 원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집행문부여등 신청서<개정 2020. 1. 10.>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취지】 위 심판사건의 심판비용액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고, 결정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과 심판비용액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6호 서식] 집행문

집행문

심판번호

사건의 표시

이 정본은 피청구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내어 준다.

20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인

◇ 유의사항 ◇

※ 이 집행문은 심판비용액 결정정보와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피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심판번호				
사건의 표시				
비용액결정 청구일자	년 월 일			
비용액결정 일자	년 월 일			
결정문 수령일자	청구인 : 년 월 일			
	피청구인 : 년 월 일			
용도	강제집행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피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비용액결정 청구일자		년	월	일
비용액결정 일자		년	월	일
비용액결정 확정일자		년	월	일
용 도	강제집행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장 인				